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41호중 “제98조”를 “제98조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제37호의2 및 제37호의3, 제4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7의3. 법 제92조제6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 대행자의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별표 13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제2항	30	60	1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 37. (생 략)	1. ~ 37. (현행과 같음)
<u><신 설></u>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u>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시정명 령</u>
<u><신 설></u>	37의3. 법 제92조제6항에 따른 <u>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 대행자의 실태점검 및 시정명 령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u>
38. ~ 40. (생 략)	38. ~ 40. (현행과 같음)
41. 법 제98조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1. 법 제98조제1항----- -----
<u><신 설></u>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u>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 원에 대한 교육훈련</u>
42. ~ 60. (생 략)	42. ~ 6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 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 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u>

	<u>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시 정명령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u>
--	---

【별표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37	75	150

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다.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3호	75	15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5호	25	50	100
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6호	25	50	100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6	12	25
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7	15	30
자. 법 제46조제2항(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		
차.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		

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카. 법 제50조제2항을 위 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 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 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1호	10	20	40
타. 법 제54조제4항을 위 반하여 수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2호	7	15	30
파. 법 제92조제1항을 위 반하여 측량기기에 대 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25	50	100
하. 법 제93조제1항을 위 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 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 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6	12	25
거. 법 제93조제3항을 위 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 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25	50	1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25	50	100
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 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25	50	100
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 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제2항	30	6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연 락 처	(044) 201 - 3480